재산신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신탁]

"재산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개발 · 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재산신탁 1
1. 재산신탁 이해하기 4
1.1.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4
1.1.1. 신탁이란? 4
2. 위탁자의 신탁 설정 7
2.1. 신탁의 설정 7
2.1.1. 신탁의 설정 방법 7
2.2.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9
2.2.1. 신탁재산의 공시 9
2.2.2. 신탁재산의 보호 10
2.3.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13
2.3.1. 위탁자의 권리와 관리·감독 13
2.4. 위탁자의 세금납부 14
2.4.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 14
3.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17
3.1. 수탁자의 선임 17
3.1.1. 수탁자의 선임과 수탁능력 17
3.2.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17
3.2.1. 수탁자의 권한과 비용·보수 청구 17
3.2.2.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20
3.3.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24
3.3.1. 수탁자의 변경 24
3.3.2. 수탁자의 임무 종료 25
3.4. 수탁자의 세금 납부 28
3.4.1.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28
4.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30
4.1.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30
4.1.1. 수익권의 취득 등 30
4.1.2.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31
4.1.3.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33
4.2.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35
4.2.1. 신탁관리인의 선임 35
4.2.2.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38
4.3. 수익자의 세금납부 39
4.3.1.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39
5. 신탁의 변경과 종료 41
5.1. 신탁의 변경 41
5.1.1. 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41
5.1.2.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42
5.2. 신탁의 종료 44
5.2.1. 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44

1. 재산신탁 이해하기

1.1.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1.1.1. 신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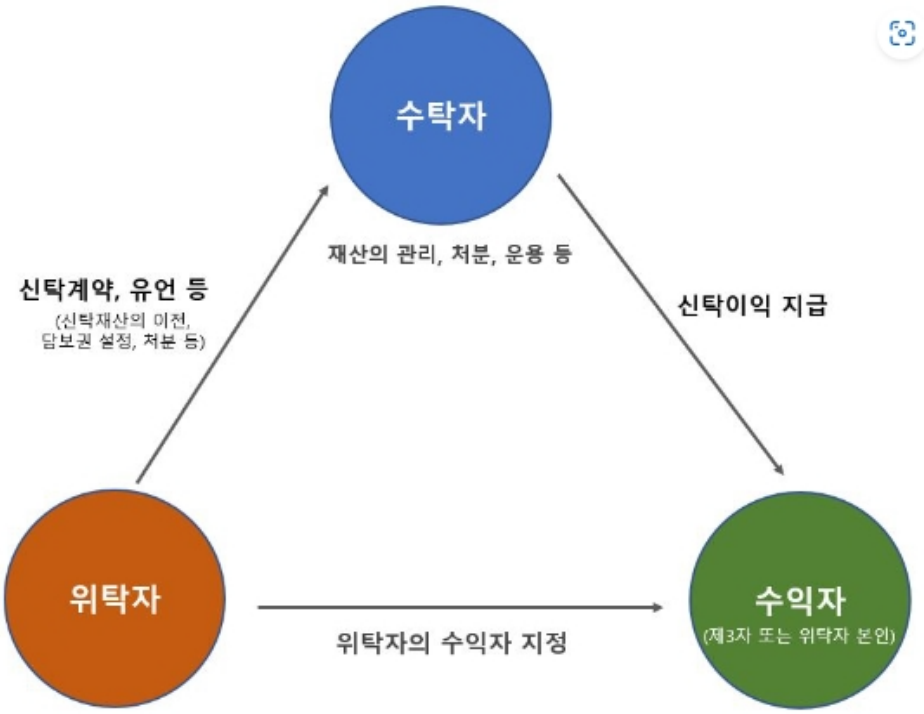
“신탁”이란?

신탁의 개념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의 구조

▪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2 참조).



※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련 판례

▪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장점

▪ 신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신탁 구성 및 설정이 가능하여 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기업의 자산유동화 수단), 자신의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려는 사람은 신탁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1 및 『신탁법 해설』, p.23 참조).

자금조달의 용이성

▪ 자금 조달의 용이성: 유한책임신탁(「신탁법」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사채(「신탁법」 제87조) 등을 통해 신탁 이용자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구분	내용
유한책임신탁	• 「신탁법」에서는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원,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채	• 「신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이 신탁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을 갖춘 신탁으로 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 발행신탁	• 「신탁법」에서는 종전에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된 불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유동화증권 외에 모든 유형의 신탁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저작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이용 사례

▪ △△시의 구시가지에 오래된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왕의심씨는 상가 재건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웃 건물의 주인들과 믿음부동산신탁사에 위탁하여 대형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신탁사가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운영 중인 다른 신탁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믿음신탁사가 운용 중인 다른 신탁들이 신탁법에 의한 유한책임신탁이어서 연쇄 부도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없고, 믿음신탁사가 건물주 외에도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많은 투자자(수익자)를 모집하였으며, 신탁사채를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왕의심씨는 걱정이 사라져 부동산개발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왕의심씨는 쇼핑몰 사업에서 받게 될 수익금에 대한 꿈을 꿉니다.

<출처: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자산관리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

▪ 자산관리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 신탁제도 중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이나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은 생전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 또는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4 참조).

구분	내용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재산의 사후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이용 사례

▪ 이북이 고향인 가수 장기부씨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하여 부동산, 주식, 저작권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재산 중 1/4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성년이 된 후, 1/4은 어머니에게, 1/4은 자신의 자선재단에, 나머지 1/4은 통일이 될 경우 이북에 두고 온 막내 동생의 후손에게 귀속시키고 싶었습니다. 장기부씨는 고문변호사와 논의한 결과 「신탁법」 상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수성가한 용났네씨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유산 중 일부로 자신이 졸업한 '두메산골' 초등학교 학생들 중 대학에 진학하는 후배들에게 임종 후 100년 동안 매년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용났네씨는 고문변호사의 조언으로 매년 '두메산골' 초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입학자를 차례대로 수익자로 지정한 개정 신탁법 상의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함으로써, 과거 자신에게 대학 입학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주었던 어느 이름 없는 독지가에 대한 보은의 한을 풀고 아무런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4 참조>

2. 위탁자의 신탁 설정

2.1. 신탁의 설정

2.1.1. 신탁의 설정 방법

신탁은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 ③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설정방법

▪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함)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3.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신탁법 해설』, p.26 ~ 30 참조).

신탁 종류	신탁 설정방법
1. 신탁계약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유언신탁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선언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함)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위 3. 신탁선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3항).

> **※ 목적신탁과 공익신탁**
>
> ▪ "목적신탁"이란 특정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신탁으로, 전형적 신탁인 수익자 신탁과 달리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해설』, p.11 참조).
>
> ▪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합니다(「공익신탁법」 제2조제2호).

▪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4항).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설정

▪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5항).

공정증서의 작성

▪ 위의 3. 신탁선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3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 **공정증서**: 사법상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제1호 참조).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하는 신탁 등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위법 또는 불능인 신탁의 제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합니다(「신탁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탁 목적의 일부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위법 또는 불능한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합니다(「신탁법」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무효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않은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신탁법」 제5조제3항 단서).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합니다(「신탁법」 제6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7조).

※ 신탁은 신탁재산이 형식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경제적 이익은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수탁자를 매개로 하여 수익권의 형태로 탈법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입니다(법무부, 『신탁법 해설』, p.73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설정하는 사해신탁은 취소 및 원상회복 할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채권자취소권)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1항 본문).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3항).

▪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사해신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8조제4항).

▪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조제5항 및 「민법」 제406조제2항 준용).

▪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8조제6항).

2.2.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2.2.1. 신탁재산의 공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은 공시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조제1항).

※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봅니다(「신탁법」 제4조제3항).

등기신청인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8항).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신탁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참조).

-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함)
-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함)
-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함)
-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 신탁의 목적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신탁종료의 사유
- 그 밖의 신탁 조항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제1항).

등기나 등록이 불가능한 신탁재산의 경우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분별 관리

▪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조제2항).

▪ 위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의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조제4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2조).

-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부

2.2.2. 신탁재산의 보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한 재산이 됩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의 분리

▪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관리해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신탁재산의 범위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신탁법」 제29조제1항).

▪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신탁법」 제29조제2항).

점유하자의 승계

▪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합니다(「신탁법」 제30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경매, 국세 등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등의 금지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강제집행등에 대한 이의 제기

▪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위의 규정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2항),

> ※ **제3자이의의 소(訴)**
>
> ■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
> ■ 이 소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개시 후 그 종료 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의의 원인이 되는 제3자의 권리는 소유권(所有權)·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등기한 임차권(賃借權) 및 점유권(占有權) 등입니다.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3항).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도 신탁재산은 보호받습니다.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3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신탁재산은 상계가 금지되고,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상계금지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1항).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2항).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 다음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6조).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 혼동(混同)**
>
> ▪ "혼동"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동일인)에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멸시킵니다(「민법」 제507조 본문).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질권의 목적물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507조 단서).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신탁재산의 첨부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8조 본문).

▪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8조 단서).

> **※ 첨부(添附)**
>
> ▪ "첨부"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을 결합시키거나 노력을 가하여 한 개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분리하면 성질이 파괴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2.3.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2.3.1. 위탁자의 권리와 관리·감독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자 권리의 제한

▪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않는다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9조제2항).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조제1항).

▪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이전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신탁법」 제10조제2항).

▪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10조제3항).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탁자의 관리·감독 권한

▪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탁자를 관리하고 감독할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위탁자의 권한	내용
수탁자 사임에 대한 동의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함께 수탁자의 사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신탁법」 제14조제1항).
수탁자 해임 동의권 및 청구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1항). • 위탁자는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3항).
신수탁자 선임 동의권 및 청구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신탁재산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권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바, 위탁자는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서류 열람·복사권 등	• 위탁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0조제1항).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청구권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
수탁자보수에 대한 변경청구권	• 위탁자는 신탁행위에서 정한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에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3항).
신탁 변경 동의권 및 청구권	•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8조제1항 및 제3항).
신탁 합병 및 분할 승인권	•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합합병 하려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작성한 합병계획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해줄 권한이 있습니다(「신탁법」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
신탁 종료 동의권 및 종료명령청구권	•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위탁자는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0조).
신탁종료시 잔여재산 귀속권	•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위탁자는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을 갖습니다(「신탁법」 제101조제2항).

2.4. 위탁자의 세금납부

2.4.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

위탁자는 소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의3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 ※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부가가치세 납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종합부동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3.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3.1. 수탁자의 선임

3.1.1. 수탁자의 선임과 수탁능력

수탁능력이 있는 자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수탁능력

▪ 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신임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되는 것이며, 수탁자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해설』, p.110 참조).

▪ 이에 따라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신탁법」 제11조).

> ※ 수탁자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003. 1. 20. 제정, 「등기선례」 제7-403호 참조).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할 때,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수탁자의 지정

▪ 위탁자는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0조 참조).

▪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신탁행위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집행을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

공동수탁자 간의 신탁재산 관계

▪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合有)로 합니다(「신탁법」 제50조제1항).

▪ 이 경우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신탁법」 제51조제1항).

▪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신탁법」 제51조제2항).

3.2.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3.2.1. 수탁자의 권한과 비용·보수 청구

수탁자는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신탁을 위해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권한

▪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신탁사채 발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7조제1항).

-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 유한책임신탁일 것
- 수탁자가 「상법」 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

> **※ 신탁사채 발행의 장점**
>
> ▪ 「신탁법」에서는 신탁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와 같이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수익증권발행신탁 + 유한책임신탁)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 ※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채를 발행하는 수탁자는 사채청약서, 채권(債券)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신탁법」 제87조제2항).

- 해당 사채가 신탁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는 뜻
- 위의 신탁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사채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이행책임을 진다는 뜻

▪ 사채 총액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합니다. 다만,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합니다(「신탁법」 제87조제3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8조).

수탁자는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발행

▪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있는 신탁을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고 하는데,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합니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8조제3항).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8조제4항).

> **※ 수익증권 발행의 장점**
>
> ▪ 「신탁법」에서는 모든 유형의 신탁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저작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증권 판매를 통한 투자자(수익자)를 모집하여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수탁자는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

▪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상환

▹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1항).

▹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2항).

▹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3항).

▪ 수익자로부터의 상환

▹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4항).

▹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입은 손해를 전보(塡補)하기에 신탁재산이 부족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5항).

▪ 위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46조제6항).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신탁법」 제48조제1항).

▪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비용상환청구권(「신탁법」 제46조) 또는 보수청구권(「신탁법」 제47조)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48조제2항).

보수청구권

▪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1항).

▪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2항).

▪ 위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3항).

▪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보수를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47조제4항 및 제46조제4항 준용).

권리행사요건

▪ 수탁자는 「신탁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비용상환청구권(「신탁법」 제46조) 또는 보수청구권(「신탁법」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49조).

3.2.2.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일정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수탁자의 선관의무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32조).

수탁자의 충실의무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3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34조제1항).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1.부터 5.까지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4조제2항).

-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위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신탁법」 제26조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34조제3항).

공평의무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35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7조제1항).

▪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7조제2항).

▪ 위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7조제3항).

> **※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
> ▪ 수탁자가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44조).

신탁사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합니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05조제1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5조제2항).

수탁자는 장부 등 서류를 작성·보존 및 비치해야 합니다.

신탁장부 등의 작성, 보존 및 비치 의무 등

▪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9조제1항).

▪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39조제2항).

▪ 수탁자는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9조제3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구분	서류 보존 기간
•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
• 위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

▪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이 경우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9조제4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구분	보관 장소
•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수탁자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함)에 비치·보관
• 위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수탁자의 사무소·영업소(수탁자를 위하여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자의 사무소·영업소를 포함함)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처리지에 보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신탁사무 서류 열람 및 복사 청구

▪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0조제1항).

▪ 위탁자와 수익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의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의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0조제2항).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국채나 지방채 등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전 관리 방법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신탁법」 제41조).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위 1.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수탁자는 신탁에서 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유한책임

▪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38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①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②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수탁자가 위 충실의무,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공평의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및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신탁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합니다(「신탁법」 제43조제3항).

수탁법인 이사의 연대책임

▪ 수탁자인 법인이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신탁법」 제43조) 및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신탁법」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원인이 된 의무위반행위에 관여한 이사와 그에 준하는 자는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45조)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사무 처리자도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신탁사무의 위임

▪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42조제1항).

수탁자와 신탁사무 처리자의 책임 범위

▪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42조제2항).

▪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42조제3항).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신탁법」 제114조제1항).

> **※ 유한책임신탁의 장점**
>
> ■ 유한책임신탁은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경우 부도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자원이나 부동산 등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하면 됩니다(「신탁법」 제124조제1항).

-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26조제1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16조).
  -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신탁사무처리지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

3.3.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3.3.1. 수탁자의 변경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는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신탁사무의 계산과 사무 인계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前受託者)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55조제1항).
- 수익자가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전수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55조제2항).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합니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53조제1항).
-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3조제2항).
-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절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속행(續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3조제3항).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

- 전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신탁법」 제54조제1항 및 「신탁법」 제48조제1항 준용).
- 이 경우 전수탁자는 「신탁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비용상환청구권(「신탁법」 제46조) 및 보수청구권(「신탁법」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54조제1항 및 「신탁법」 제49조 준용).
- 전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권(「신탁법」 제46조)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4조제2항).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으로 인한 권리 불행사를 방지하여 신탁재산과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수탁자 원상회복의무(「신탁법」 제43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2조).

3.3.2. 수탁자의 임무 종료

수탁자가 사망, 파산 등으로 수탁능력을 상실하면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수탁자의 임무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됩니다(「신탁법」 제12조제1항).

-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 이하 같음)를 받은 경우
-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임무 종료 사실의 통지

▪ 아래의 사유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해당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종료 사유	통지 사항
•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통지 •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을 통지

신탁재산의 인계 등

▪ 수탁자의 사망,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또는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2조제4항).

수탁자 법인의 합병 후 수탁자의 권리

▪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12조제5항).

신탁행위에서 정한 임무 종료 사유나 수탁자가 사임하면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되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3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4조제3항).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 위 임무 종료 사유 또는 수탁자의 사임으로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신탁법」 제15조).

위탁자와 수익자는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를 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등에 의한 수탁자 해임

-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16조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수탁자를 해임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6조제2항).

임무 위반, 중요 사유에 따른 수탁자 해임

-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3항).
- 위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6조제4항).

신탁사무의 인계 및 재산 보관의무

- 해임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수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5항).

임무 종료 등으로 수탁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1항).
  -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2항).
  -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7조제3항).
-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4항).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신탁법」 제17조제5항).
- 법원은 위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7조제6항).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신탁법」 제18조제1항).

-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 법원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8조제2항).

▪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신탁법」 제18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준용).

▪ 법원은 위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준용).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신탁법」 제19조제1항).

▪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임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임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법원의 신탁재산관리인 공고, 등기 또는 등록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20조제1항).

-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신탁법」 제19조제1항)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않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20조제2항).

▪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위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20조제3항).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사무를 인계받을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수탁자의 선임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법원에 신수탁자 선임 청구

▪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2항).

▪ 이 경우 법원은 이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4항).

유언신탁에서의 선임

▪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단독으로 신탁자를 선임할 수 있고(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신수탁자를 선임합니다(「신탁법」 제21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 준용).

▪ 법원은 이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4항).

3.4. 수탁자의 세금 납부

3.4.1.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수탁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납부해야 하지만(「법인세법」 제5조제1항 참조), ① 목적신탁, ②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함)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는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것

▪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11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

▪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함)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함)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①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또는 ② 이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 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제2항).

재산세 납부(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부해야 하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참조). 그러나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

-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함

- 위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취득세 납부

▪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4.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4.1.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4.1.1. 수익권의 취득 등

신탁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며 수익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권의 취득

▪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신탁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함)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6조제1항).

수익자 지정 사실의 통지

▪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6조제2항).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

▪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57조).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자를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자의 지정

▪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함)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8조제1항).

수익자지정권등의 행사방법

▪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수탁자의 통지의무

▪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8조제4항).

수익자지정권등의 상속 금지

▪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58조제5항).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수익자 변경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9조제1항).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위 2.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9조제2항).

수익자연속신탁

▪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신탁법」 제60조).

4.1.2.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수익자의 수익권은 신탁행위를 통해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수익권의 제한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1조).

· 「신탁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신탁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신탁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신탁법」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신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신탁법」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신탁법」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

신탁채권의 수익채권에 대한 선순위

▪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함)보다 우선합니다(「신탁법」 제62조).

수익자의 수익채권은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릅니다. 다만,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하며,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63조).

수익자는 수익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수익권의 양도성

▪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4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4조제2항).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1항).

-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 위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2항).

수탁자의 항변

▪ 수탁자는 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3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위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4항).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6조제2항).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 수익권의 질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1항 준용).

-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 위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 준용).

▪ 수탁자는 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 준용).

▪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 준용).

질권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신탁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도 존재합니다(「신탁법」 제66조제4항).

질권의 우선변제성

-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5항).
-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합니다(「신탁법」 제66조제6항).

4.1.3.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신탁법」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1조제1항).
-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익자집회에 관한 규정(「신탁법」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릅니다(「신탁법」 제71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71조제3항).

다수의 수익자가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수익자집회의 소집 및 소집권자

-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소집합니다(「신탁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수익자집회 소집청구권

-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수익자집회 소집절차

-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이하 “소집자”라 함)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2조제5항).

수익자집회 소집시 서류의 제공

- 소집자는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문서(전자문서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수익자의 경우만 해당함)로 제공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2조제6항).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산정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습니다(「신탁법」 제73조제1항).
  -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수익권의 수

-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자기수익권의 의결권제한

- 수익권이 그 수익권에 관한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경우 수탁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3조제2항).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문서(소집자가 전자문서로 행사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만 해당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3조제3항 전단).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수익자가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집회일 3일 전에 소집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3조제4항).

-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수익자가 타인을 위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집자는 수익자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3조제5항).

의결권의 대리행사

-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익자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3조제6항).

수탁자의 의견진술권 및 출석의무

- 수탁자는 수익자집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수익자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수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3조제7항).

수익자집회 의장의 선임방법

- 수익자집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신탁법」 제73조제8항).

수익자집회의 결의 정족수

-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4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4조제2항).

  -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 「신탁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 「신탁법」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 「신탁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의사록 작성의무

-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4조제3항).

수익자집회 결의의 효력

▪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신탁법」 제74조제4항).

수익자집회의 소요비용

▪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74조제5항).

> ※ **수익자집회 활용 사례**
>
> ▪ 토종영화사는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지만, 회사 자금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하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사를 섭외하는 것도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토종영화사는 작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영화의 저작권을 미래은행에게 위탁**하였고, 미래은행은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여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익증권을 매수한 **수익자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익자집회를 소집하여 제작비용의 사용,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하여 의논하고, 다수결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익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응한 결과 영화는 흥행기록을 세우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던 수익자들도 높은 투자수익을 거두었습니다.
>
> <출처: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5. 참조>

4.2.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4.2.1. 신탁관리인의 선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 유형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67조제1항).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또는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67조제2항).

▪ 법원은 위에 따라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4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 유형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3항 전단).
④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이하 “종류수익자”라 함)가 여럿인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3항 후단).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해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습니다.

신탁관리인의 지위

▪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해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68조제2항).

신탁관리인의 권한

▪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1항).

신탁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무처리 방법

신탁관리인 유형	사무처리 방법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3항).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신탁관리인이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각 신탁관리인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해당 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4항).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선임된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선임 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5항). ※ 이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8조제7항).
④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종류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자신을 선임한 종류수익자만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여럿의 신탁관리인들은 그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6항). ※ 이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8조제7항).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탁관리인 유형	임무종료 사유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됩니다(「신탁법」 제69조제1항).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의 경우	•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인 사유로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됩니다(「신탁법」 제69조제2항). √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 위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9조제3항).

신탁관리인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신탁관리인은 선임 시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의 승낙 없이 사임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0조제2항).

▪ 사임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임한 신탁관리인은 새로운 신탁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관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신탁법」 제70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준용).

※ 이 경우 수익자, 신탁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존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새로운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7항).

신탁관리인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는 언제든지 그 신탁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경우 수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4항).

▪ 해임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임된 신탁관리인은 새로운 신탁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70조제5항,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 법원은 신탁관리인의 사임허가결정이나 임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6항).

※ 위의 경우 수익자, 신탁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존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새로운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7항).

4.2.2.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반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5조제1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가 한 취소의 효력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위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신탁법」 제75조제2항).

취소권의 제척기간

▪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6조).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그 행위의 유지(留止)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7조제1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7조제2항).

4.3. 수익자의 세금납부

4.3.1.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수익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의3 참조).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수익자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증여세 납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함

  √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증여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상속세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수익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할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수탁자가 납부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함)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함)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함)를 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제1항).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위 1.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5. 신탁의 변경과 종료

5.1. 신탁의 변경

5.1.1. 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신탁변경

-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88조제1항).
-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88조제2항).

법원에 대한 신탁변경 청구

-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8조제3항).

신탁변경이 금지되는 경우

-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88조제4항).

신탁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9조제1항).
  - 신탁의 목적
  - 수익채권의 내용
  -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수탁자의 수익권 대금 지급

- 수탁자는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신탁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에 대한 매수가액 결정 청구

-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위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9조제4항).
- 법원이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9조제5항).
-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기간만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후)일 다음 날부터 지급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9조제6항).

수익권의 소멸

▪ 수익권 매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익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89조제8항).

5.1.2.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1개의 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합병

▪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0조).

신탁 합병계획서의 작성

▪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1조제1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9조).

- 신탁합병의 취지
-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 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행위의 내용 및 설정일
-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재산의 목록 및 내용
- 합병할 각 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신탁 합병계획서의 승인

▪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91조제2항).

반대수익자의 수익매수청구권

▪ 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 수익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1조제3항 전단).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이의제출)

▪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름)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2조제1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10조).

- 합병계획서
-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의 합병으로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92조제2항 및 제3항).

합병의 효과

▪ 합병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무는 합병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합니다(「신탁법」 제93조).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거나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4조제1항).

▪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4조제2항).

수탁자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5조 및 「신탁법 시행령」 제11조).

-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
- 분할되는 신탁재산 및 신탁채무의 내용과 그 가액
- 「신탁법」 제123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채무를 승계하는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와 특정된 채무의 내용
-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신탁관계인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승인

▪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95조제2항).

반대수익자의 수익매수청구권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은 수익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5조제3항 전단).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수탁자는 신탁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름)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6조제1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12조).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1개월 이상이어야 함)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96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것이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96조제3항).

분할의 효과

▪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합니다(「신탁법」 제97조제1항).

▪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신탁법」 제97조제2항).

5.2. 신탁의 종료

5.2.1. 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신탁은 일정한 종료 사유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있으면 종료됩니다.

신탁의 종료 사유

▪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신탁법」 제98조).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이 합병된 경우
-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1항).

▪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2항).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9조제3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99조제4항).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0조).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 다음의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함)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1항).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의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2항).

▪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이 법원에 의해 종료된 경우(「신탁법」 제3조제3항)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3항).

▪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봅니다(「신탁법」 제101조제4항).

신탁재산의 국고귀속

▪ 위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신탁법」 제101조제5항).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사무에 대한 최종 계산을 하고 수익자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탁법」 제103조제1항).

계산 승인후 책임의 면제

▪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03조제2항).

계산 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103조제3항).

신탁의 청산

▪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신탁법」 제104조 참조).

- 청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104조 및 제132조제2항 준용).
-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 됩니다(「신탁법」 제104조 및 제133조제1항 본문 준용).